

의안번호	2200990
의 퇴 인	박홍근의원
회 답 일	2024.07.29.
추계번호	24D133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제5항(국회사무처) 신설	법률안의 입안, 체계·형식과 자구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 법제전담기구를 둠	의무규정
	안 제37조제1항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개정	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사항에서 법률안·국회규칙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의 심사 에 관한 사항을 삭제	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제5항(국회사무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	안 제37조제1항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개정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법률안의 체계·자구심사 업무를 사무처 내의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)는 법률안의 심사나 입안 시 필요한 경우, 법제전담기구에 법률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함
-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·자구 심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법률

안은 2,938건이었음

[표 2] 제21대국회 법률안 체계·자구 심사 현황

(단위: 건)

	접수	의결	미상정	계류
제21대국회	2,938	2,832	12	94

자료: 법제사법위원회

-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처리하는 법률안 건수와 유사한 위원회와의 정원 차이를 고려하여 법률안의 체계·자구 검토 업무를 위해 증원된 인력 규모를 산정하면, 약 10명 정도로 추정됨

- 법제사법위원회 정원은 32명으로 제21대 국회때 접수된 의안건수는 2,182건이며, 의안건수가 유사한 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(2,389건), 환경노동위원회(2,183건), 국토교통위원회(2,356건)가 있고, 세 위원회의 정원은 각각 19~22명이므로, 법제사법위원회 정원(32명) 중 약 10명이 체계·자구 심사 업무를 위해 증원된 인력으로 추정할 수 있음

[표 3]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원 및 의안 접수건수 현황

(단위: 명, 건)

	법제사법위원회	기획재정위원회	환경노동위원회	국토교통위원회
정원	32	22	19	22
제21대국회 의안 접수건수	2,182	2,389	2,183	2,356

자료: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(2023.9.18) 및 의안정보시스템

- 개정안에서 사무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제전담기구의 형태와 의뢰된 법률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인력 증원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발생 가능

-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,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¹⁾하고 있어, 개정안의 법제전담기구를 법제실

1) 「국회사무처 직제」 제7조(법제실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로 해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 검토 업무와 조사관 10명을 법제실로 이관·재배치하여 법제실의 각 과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법제실 과별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 및 정원 현황

구 분	의뢰 및 처리	정원
법제총괄과	3,195	14
사법법제과	4,319	7
행정법제과	5,318	9
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	5,359	9
복지여성법제과	5,923	9
정무환경법제과	5,376	10
재정법제과	5,193	8
산업농림해양법제과	4,352	8
국토교통법제과	4,167	7
법제연구과	919	6
법제분석평가과	1	6
합 계	44,122	93

자료: 국회사무처 법제실

- 그러나 법제실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거나 개정안의 법률안 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, 동 법제전담기구의 관리 및 행정업무 담당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, 의뢰된 법률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 증원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 법제전담기구의 형태와 법률안 체계·형식 자구 검토를 위한 실무인력 증원 여부 등 구체적인 인력운용계획이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하여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.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
2. 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·평가
3.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
4.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